

제7조(입장료 등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일부시설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4.6.>

1. 시설에 유물 또는 자료를 기증한 사람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국민·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
4. 65세 이상의 노인
5.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유아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21.9.30.>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21.9.30.>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<신설 2021.9.30.>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신설 2021.9.30.>
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신설 2021.9.30.>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<신설 2021.9.30.>
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신설 2021.9.30.>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<신설 2021.9.30.>
1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

인을 동반한 1명 <개정 2019.7.31., 2021.9.30.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.>

15. 울산광역시 남구(이하 "구"라 한다)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<개정 2021.9.30.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.>

16. 시설 운영 수탁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<개정 2021.9.30.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.>

1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책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<개정 2021.9.30.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.>

② 공익목적의 행사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